

# 2023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

## 1. 지원목적

-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

## 2. 신청기간

- 2023년 2월 2일(목) ~ 2023년 3월 7일(화), 34일간

## 3. 신청자격

- **정부지정핵심사업** :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(개인사업자, 기업 명의\*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)

\* 기업명이란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·지입 차량을 뜻함

- **녹색물류공모사업** : 물류기업, 화주기업, 물류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

\* 물류기업,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

## 4. 지원대상(사업제안분야)

- **정부지정핵심사업** : 무시동히터,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
- **녹색물류공모사업** :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(자유공모)

- 공동수송·배송과 친환경·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,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, 장비, 차량개조 등
- 녹색물류 기술·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·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

## 5. 지원규모(12.3억원)

사 업 명	예산 (백만원)	지원규모 및 상한액
① 정부지정핵심사업	974	
▪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	4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50%이내</li> <li>▪ (상 한 액) 대당 최대 40만원</li> <li>※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% 이내</li> </ul>
▪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	54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지원규모) 사업비의 50%이내</li> <li>▪ (상 한 액) 대당 최대 80만원</li> <li>※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% 이내</li> </ul>
② 녹색물류공모사업	252	
▪ 민간공모사업	19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지원, 상한액규모) 중소·중견기업은 50%,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30% 이내</li> </ul>
▪ 효과검증사업	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지원규모) 시험비 전액지원(단,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)</li> <li>▪ (상 한 액) 건당 2천만원 이내</li> </ul>

\*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

\*\*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량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, 별도 지정 연식은 ‘녹색물류협의회기구’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

\*\*\*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·운영을 통해 사업포기·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

\*\*\*\* 기업상한액은 중소·중견기업은 최대 50%·150백만원이내,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%·100백만원 이내 지원,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

\*\*\*\*\* 전년도 ‘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’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(S 100%, A 80%, B 60% 지원, 단,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)

## 6.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

-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(이하 지침이라 함)[별첨1]의 성능기준[별첨2]을 충족하여야 함

## 7. 신청방법

-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(http://kotsa.or.kr/gl)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
-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, 우편, e-mail 제출
  - 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직접, 우편, e-mail 도착분만 인정
- 온·오프라인 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
  - 주소 : (우 39660)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
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
  - 온라인(e-mail) 주소 : [shrtor23@kotsa.or.kr](mailto:shrtor23@kotsa.or.kr)
  - 전화 : 054-459-7457, 7143
- 오프라인 접수처 : 화물복지재단 매송휴게소 화물자동차 힐링센터
  -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 고속도로 315  
(매송휴게소 목포방향), 2층 [별첨3]
  - ※ 신청서 직접 제출만 가능(해당 주소지로 우편 접수 불가능)

## 8. 제출서류

-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, 제출시기, 종류,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[별첨4]과 같음

구분	공통 제출	추가 제출
개인운송사업자	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원부(갑기준) 사본 1부	-
법인사업자	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※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⑤ 기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	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계획서요약서

※ e-mail 제출시 상기 서류의 스캔본 첨부

## 9.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

-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 [별첨5]에 따름
- 선정결과 발표(예정) : 2023년 4월 중(변경 시 녹색물류 누리집 게시)  
※ 선정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안내

## 10.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

-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
-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
-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

구 분	당해 사업연도 장착 인정기간		재배정 인정기간
	장착 인정기간	조기장착 인정기간	
무시동 히터	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	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	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
무시동 에어컨	착수일로부터 8월 말까지		재배정일로부터 9월 말까지
그 외 공모사업	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		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

## 11.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

-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(물류기업 · 화주기업 · 개인사업자)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(효과검증 제외)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

**< 조기장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(안) >**

기업등급 종합평가 = 이행계획 평가 + 제도참여가산점

\* 제도참여율 :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장착률 100% 달성 시 10점 부여

-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 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  - 단,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,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

**< 페널티 적용기준(안) >**

구 분	장비 장착률	페널티 부과 내용	비 고
당초 수량	50% 미만	2년간 지원 제외	
	50% 이상 ~ 80% 미만	1년간 지원 제외	
재배정 수량	100% 미만	1년간 지원 제외	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

**12. 유의사항**

- 본 사업은 e-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수령을 진행(www.gosims.go.kr)
-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,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
-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

- 기 지원받은 차량(차대번호 기준)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(사진 등)하여야 하며,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, 중복지급,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, 개인사업자의 책임임
- 위험물질(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)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(사진 등)하여야 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(T. 054-459-7457, 7143)